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신설〉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96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4. 7. 30.
3. 회부연월일: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신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u> <u>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u> <u>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u> <u>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u> <u>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u> <u>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u> <u>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u>

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사
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지원,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1년에 2,269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050건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증가로 교원의 심리적 안정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표 1] 교육활동 침해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교육활동 침해 건수	2,269	3,035	5,050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을 해소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관련 비용 및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에 따라 교원이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개정시 고려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2]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비교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29조의2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① 사업 추진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① <u>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u>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② 사업 정의	1. <u>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u> 2. <u>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u> 3. <u>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u>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u>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u> 을 말한다.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	4. <u>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29조의2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사업 추진 방식 및 지원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실태 조사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29조의2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위임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지원,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고, 유사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기함

자료: 「교원지위법 개정안」 및 「정신건강복지법」 중 해당 조항 정리

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는 ‘학교의 장’이 ‘구성원’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이 ‘교원’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학교의 구성원 중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교원 전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2호와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는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등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제4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상이하며,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권익보호 및 편견 해소에 관한 내용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제69조(권익보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및 정의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정신건강 관련 비용 지원,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현행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실시 중인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

「교원지위법」은 제20조에서 관할청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 제22조에서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1) 「교원지위법」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 제29조에서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그리고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 상담,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률안 개정으로 신설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육활동보호센터」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표 3]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현황(2024년)

(단위: 건)

구분	보상건수
심리상담	170
심리치료	15
합계	185

주: 2024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현황 파악 기간은 2024.1.1.~ 5.31.이나, 2024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적용 시작 시기는 시·도별 계약 조건에 따라 2024. 1.1.부터 4.1.까지 다소 상이함
자료: 교육부

[표 4]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현황(2023~2024년)

구분	이용 인원(명)		이용 건수(회)	
	2023	2024.3.~6.	2023	2024.3.~6.
상담	14,496	8,000	34,066	13,413
심리치료	2,407	836	7,502	2,232
법률상담	3,607	1,887	4,102	2,018
예방교육	53,640	57,135	22,831	9,833
기타	11,778	12,043	7,969	4,482
합계	85,928	79,901	76,470	31,978
월평균	7,161	19,975	6,373	7,995

주: 2023년은 해당 학년도(2023.3.~2024.2.), 2024년은 3~6월 기준
자료: 교육부

③ 사업추진 방식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29조의2제2항은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④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 호에서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등 항목을 특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29조의2제4항은 교육감이 2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항목과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국민 전체를 대상⁴⁾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해당 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⁵⁾ 교원과 정신

4) 2021년 실시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됨(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2021.12.)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건강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항목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에 대한 교육감의 자료요청 권한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 (안 제29조의2제1항)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규정 신설: 수정 수용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폭넓은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교원지위법」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 및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중복되는 내용은 병합할 필요가 있음.

[수정(안)]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2조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기관 및 제29조의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 지원

2. 정신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29조의2제2항)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규정 신설: 수정 수용

- 피해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피해교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교원지위법」 제29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관할청이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포함하여 피해교원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

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 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 피해교원의 심리 상담을 위해 연계한 상담센터가 제외되어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한정되므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내포됨.
- 이에, 개정안은 동조 1항과 연계하여 수정이 필요함.

[수정(안)]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2조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기관, 제29조의 교육활동보호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29조의2제3항)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 수정 수용

- 피해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교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개정안은 동조 2항과 연계하여 수정이 필요함.

[수정(안)]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안 제29조의2제4항) 교원의 정신건강실태 조사 규정 신설: 신중 검토 필요

-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내실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 우리부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24.3.~'24.10.)하고 있으며, 추후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며,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해당 결과를 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이에, 추진 예정 사업으로 해당 조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조문 내용에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개정조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 경찰공무원 의료지원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료지원)에는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사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료지원)에는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 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참고] 소방공무원 실태조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는 소방청장이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에는 정기실태조사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 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개정안 제29조의2의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유 지원은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교원 뿐만 아니라 소진교원, 자살징후 교원,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 발생 교원 등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 사용한 ‘정신건강’ 용어와 진료 및 프로그램 신청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개정안 제29조의제4항의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현재 온라인 심리검사 등의 사업으로 교원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하고 있고, 상담 및 힐링 연수 등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
○ 경기도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개정안 제29조의2 신설보다는 기존의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교원의 심리적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29조의2제4항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교사가 부동의할 경우 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문제점과 결과 자료가 교사 재평가 등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 △현재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경우 대상자가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89